행정명령서

- 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 - 가. 처분대상: 전라북도 전역 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 - 나. 처분기간 : 2022년 1월 17일 0시 ~ 2022년 2월 6일 24시(3주간)
 - 다.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(붙임 참고)
 - 라. 처분이유
 -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 - 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 - 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 - 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 - 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
- 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.
- 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연 락 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최 권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행정주무관	063-280-3823

2022. 1. 14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붙 임 주요 방역수칙

- ▶ '자율과 책임을 기반'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'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'
- 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

공통 기본 방역수칙(모든 시설 적용)

- 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 · 실내 마스크 착용
-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· 일 1회 이상 소독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5종 >

시설명	방역수칙
▲ 유흥시설 등 *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립 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	 (운영시간) <u>21시까지</u>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(취식 가능 여부) 콜라텍-무도장은 불가능, 그 외 유흥시설 가능
▲ 노래(코인)연습장	· (운영시간) <u>21시까지</u>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 ▲ 카지노(내국인)/경륜경정· 경마장	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▲ 식당·카페	 (운영시간) 21시까지 (21시 이후 포장 배달)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)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PC방 ▲ 멀티방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파티룸	 (운영시간) 22시까지 「의료법」제82조 및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▲ 영화관·공연장	 (운영시간)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-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▲ 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▲ 도서관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백화점·대형마트 ※ 대규모점포 및 3,000㎡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
- *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
- ** 방역패스 관련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라질 수 있음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>

시설명	방역수칙
▲ 학원	· (운영시간) 22시까지 (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)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여부 구분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여부 구분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▲ 오락실	· (운영시간) <u>22시까지</u> ·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4㎡당 1명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수용인원의 50%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▲ 실외체육시설 ▲ 상점·마트 등 (3000m²이상 대규모는 제외)	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여부 구분 없이, 밀집도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▲ 전시회·박람회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4㎡당 1명 *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
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 *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▲ 결혼식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m² 당 1명 준수 + 모암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/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▲ 돌잔치, 장례식	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m² 당 1명 준수 + 모임·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/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~300명 미만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▲ 종교시설	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%(최대 299명까지)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%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
- 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- 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